그린뉴딜 유망기업 100
프로젝트 지원계획

<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>



2021. 2

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목 차

1 사업 배경

2 사업 개요

3 지원 내용

4 평가 절차

5 온라인 접수방법

1. 사업 배경

■ **(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)** 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성장 지원

- 환경부·중기부가 협업하여 2020년을 시작으로 **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·육성**

녹색 유망 중소기업이 녹색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그린 유니콘 기업 성장

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(환경부)	그린벤처 프로그램(중소벤처기업부)
•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 집중 육성	•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심의 중소기업 집중 육성
•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자금, 최대 30억원 지원	•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, 최대 30억원 지원

※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통합공고문 및 사업안내서(중기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사업 개요

- **(목 적)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**
- **(지원규모) 15개사 내외** (최종 선정기준)
- **(지원대상)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**
- **(지원분야) 청정대기, 자원순환, 스마트 물, 탄소저감, 녹색 융·복합 등 5대 녹색산업 선도 분야**

구 분	세부분야	관련 기술(예시)
청정대기분야	대기오염 저감 소재·부품·장비	대기오염방지시설, 에어필터, 환경촉매, 대기/굴뚝/실내환경 계측·측정장비, 공기청정 건물공조,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등
자원순환분야 (탈플라스틱 포함)	플라스틱 개선·대체, 폐기물 자원화, 소재·부품·장비	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,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,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
스마트물분야	상·하수도, 비점오염, 통합 물관리, 소재·부품·장비	수처리 설비 및 장비, 수질 계측·측정장비, 해수담수화, 하수재이용, 물절약제품, 비점오염 및 물순환 관리기술 등
탄소저감분야	온실가스 저감, 저탄소 서비스·제품	Non-CO_2 온실가스 저감,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, 폐자원 에너지화,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전환기술 등
녹색 융·복합 분야	융합형 환경기술,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	디지털, IoT, AI 등 관련기술을 적용한 융·복합 환경사업,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,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

< Check Point >

1. 녹색기술 '보유'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녹색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음
   - 다만, 기술 특허, 관련 제품 매출액, 기술이전 약정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

2.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/산업 분야가 5대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됨

3. 주 업종이 녹색기술 분야가 아닌 타산업(예, IT기업) 분야에서 신청하는 경우
   -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을 기업의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심의과정에서 검토함

4. 두 개 이상 기업이 컨소시움 형태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중소기업 단독으로 신청
   - 연구개발(R&D)과제도 '통합형과제(총괄+협동)'가 아닌 '개별과제'로 지원하는 방식임

5. 환경부 프로그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, 동시에 두 개 프로그램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

3. 지원 내용

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

과제별 지원내용

- **(사업화 과제) 시제품 제작, 성능평가, 제품 설비의 인증/검증 및 홍보,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, 해외시장진출 등 사업화 자금 지원**
- **(연구개발 과제) 녹색기술 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 실증화 R&D(연구개발) 지원**

구분	공모 방법	추진 단계	지원사업명	지원 기간	'21년 정부출연금 (총 정부출연금)
사업화	자유	-	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	3년	7.5억원 이내 (총 3년 22.5억원 이내)
연구개발 (R&D)		실용 또는 실증	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		2.5억원 이내 (총 3년 7.5억원 이내)

< Check Point >

1. 사업화 과제와 연구개발 과제는 반드시 모두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둘 중 하나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**자격요건 미달**

2. 사업화 과제의 아이템과 연구개발 과제의 아이템은 동일할 수 없으며, 다른 내용의 아이템을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각각의 과제를 작성함
   -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 및 주력사업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은 '사업화' 과제로 제출 권장
   - 기술고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은 '연구개발' 과제로 제출 권장

   ※기업이 최근에 수립한 중장기 연구개발(R&D) 전략 및 사업화 전략에 따라 작성을 권고함

3. 사업화 목표액은 총정부지원금의 최소 **2~3**배 이상으로 매출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며, 협약기간내 관련 사업화 기술제품으로 인해 매출발생 필요

4. 본 프로그램은 다년도 협약과제로 1단계(2년), 2단계(1년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차년도 연차평가는 생략하나 '연차실적 및 차년도 계획서'를 제출하고 '검토'하는 단계로 진행

4. 평가 절차

- **총 3차 평가(서면-발표-최종선정)를 통해 최종 선정**

사업 계획서 (신청서) 작성/제출	사전 서류검토	사전 서면평가	발표평가	현장실사 (필요시)	전문기관 조정	최종선정	확 정
[신청기업]	전담 관리위원	서면 평가 위원회	평가위원회		전담관리 위원 등	선정심의 위원회	[환경부]
	[전문기관]						

사업화 과제 평가 (75%)

- 시장성
- 사업성
- 기술성
- 기업역량
- 정책부합성

연구개발 과제 평가 (25%)

-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
-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
- 연구개발 성과 활용,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

합산점수

[참고] 신청서 작성

기업 성장 전략서

[붙임 1. 기업성장전략서]

1. 기업경영현황

가. 기업 성장단계별 연혁

구분(예시)	연	월	연 혁 (설립, 증자, 대표자 · 상호 · 업종 변경, 공장신축, 이전 등)
창업단계			
시장진입			
상업화			
성장단계			
작성요령	▸ 지사설립, 수출 달성, 표창 수상, 투자유치 등 대표적 연혁을 기재 ▸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후의 자본, 대표자 등 변동 상황을 포함하여 기재 ▸ 법인 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(유,무상증자)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		

나. 주력 상품 현황 ※ 최근 3년 재무제표 기준 신청과제와 관련되는 실적 작성

○ 주력제품·서비스 현황과 최근 변화 기재

○

○

연 도	20XX	20XX년	20XX년
매출 1위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
매출 2위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
매출 3위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
매출 4위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
매출 5위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	○○제품(%, 백만원) □녹색산업 / □일반산업
전체 매출액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
작성 요령	▸ 최근 3년 매출액이 높은 순위권 제품 또는 서비스 작성 - 재무제표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제품 또는 서비스 매출액의 점유율 계산 - 제품 또는 서비스의 녹색산업 해당 여부를 기입하고 녹색산업으로 정의한 사유 기술		

사업화 계획서

[붙임 2.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화계획서]

※ 협약이지입력

□ 신청용
□ 협약용

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화계획서

분야명	정밀대기분야, 자원순환분야, 스마트물분야, 탄소저감분야, 녹색융·복합분야에서 택 1				
과제명					
신청기업 현황	기업명		기업유형	( ) 법인, ( ) 개인	
	법인등록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	
	설립일자		주생산품·서비스		
	주소(본사)				
	주소(공장)				
	대표이사	성 명	전 화		
		E-mail	휴대전화		
사업 책임자	성 명		생년월일		
	부 서		전 화		
	직 위		휴대전화		
	E-mail		FAX		

총사업비 (단위 : 천원)

단계	연도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		합계
			현금	현물	
1단계	1차년도				
	2차년도				
2단계	3차년도				
합계					

당해연도 협약기간	. . ~ . . (개월)
당해단계 협약기간	. . ~ . . (개월)
총 협약기간	. . ~ . . (개월)
참여제한 사가진단	□부도,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□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□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, □휴·폐업 중 □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□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□사업화(매출발생) 목적이 아닌 단순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

본 사업과 관련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첨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각 1부

년 월 일

(기업명) 대표이사 (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연구개발(R&D) 계획서

[붙임 3]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

[「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」 별지 제2-1호서식]

□ 신청용
□ 협약용

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

과제번호			공모구분		
사업명			단계/사업		
대분야			중분야		
보안등급	일반( ), 보안( )				
과제성격	응용( ), 개발( )				
추진단계	ex) 실증사업화, 실용화, 원천, 공공활용, 공공활용(Test-bed)		추진방식		
주관 과제명					
과제명	국문				
	영문				
주관연구기관	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		
연구 책임자	성명		직급(직위)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		
	휴대전화번호		과학기술인등록번호		
참여연구원	책임급	( ) 명	박사후연구원	( ) 명	
	연구원	( ) 명	학생	박사 ( ) 명, 석사 ( ) 명, 학사 ( ) 명	
총연구기간	YYYY. MM. DD – YYYY. MM. DD(개월)				
당해단계연구기간	YYYY. MM. DD – YYYY. MM. DD(개월)				

연구개발비 현황(단위: 원)

연도		정부 출연금 (A)	민간부담금			정부 외 출연금(E)	상대국 부담금(F)	합계 (G=A+D+E+F)
			현금(B)	현물(C)	소계(D=B+C)			
1단계	1차년도							
	2차년도							
2단계	3차년도							
합계								

참여기관 (협동연구기관, 위탁연구기관, 참여기업)	기관명	책임자 성명	직급(직위)	전화번호	전자우편	과학기술인등록번호
참여기업	참여기관 중 중소기업( )개, 중견기업( )개, 대기업( )개					
국제공동연구	상대국 연구기관 수		상대국 연구개발비		상대국 연구책임자 수	
실무담당자	성명		직급(직위)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			
	휴대전화번호					

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아울러,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,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주관연구책임자 : (인)

주관연구기관 장: (직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※ 본 사업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- 관리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'사업화과제'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관리지침을 적용받게 되고 '연구개발(R&D)과제'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, 연구관리지침, 연구개발비 정산지침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.

< 작성 원칙 >

1. 기업 성장전략서는 기업의 최종적인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매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작성하되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됨

2. 사업화와 연구개발은 신청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작성해야 되며, 두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음

- 사업화 과제 '위탁사업비'는 사업비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경비로 아래 9개 분야의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에 한해서 적정 소요금액을 편성

※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: ①사업화 전략 수립 ②특허 전략 수립 ③수출 전략 수립 ④인·검증 지원 ⑤공정/성능 개선 ⑥양산 체계 구축 ⑦시장 검증 ⑧디자인 개선 ⑨재무·투자 전략 수립

3.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 참여인력은 두개 모든 과제에 참여하는 중복인력을 최소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과제책임자의 **타사업 중복참여**에 따른 수행능력이 평가됨

4.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계획은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서 작성시 연구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여, 각각 다른 아이템을 권장함

★기업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과 사업화 전략을 참고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, 신사업 시장진출, 제품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한 기업 성장전략 관점에서 작성 필요

5. 온라인 접수 방법





- Internet Explorer에서 Eco-PLUS 연구관리시스템 접속 (**http://ecoplus.keiti.re.kr**)

사업 신청시 숙지사항



사업화, **R&D 2**개의 과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.

웹**(web)**상에서 입력한 내용을 인쇄한 '웹출력물'을 신청서 앞부분에 삽입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**NTIS**에서 과학기술인번호 발급 후 미리 **Eco-PLUS**에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세요.



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참여연구원 정보에 입력해주세요.



계상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비목별 사업비를 편성하여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
Eco-PLUS 연구관리시스템은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잘 작동됩니다.

접수마감당일에는 사용자가 많이 몰립니다.
사전에 미리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접수 마감시간 18:00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
특히, 마감시간(17:30~17:59)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시스템 입력하는 기간에 여유를 두고 최소 5일전부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당일에 입력을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PC, 노트북 환경설정 문제로 신청기업에서 입력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, 원활하게 입력이 되는 컴퓨터로 계속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및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감독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시스템 사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

02-2284-1489, 1490 으로 전화 주세요.

[참고1] 사업화과제 관련 유의 사항

● 지원범위

- 직접적인 양산에 관여하는 비용은 본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. (사유 : WTO 보조금 규정 위배)
- '시제품'을 제작하여 처음부터 제품 내수·수출 목적으로 '유상' 판매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.

● 위탁사업비

- 위탁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비로서 아래 9가지 세부 지원분야만 가능하며 '기술개발(R&D)' 성격의 위탁은 불가능

※ 세부 지원분야 : ①사업화 전략 수립 ②특허 전략 수립 ③수출 전략 수립 ④인·검증 지원 ⑤공정/성능 개선 ⑥양산 체계 구축 ⑦시장 검증 ⑧디자인 개선 ⑨재무·투자 전략 수립

● 기자재 및 시설비

- 장비·재료비 하위항목에 있는 기자재 및 시설비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'임차'에 관한 경비로 구매가 불가능하며 장비 성격이 아닌 시제품 제작 경비는 '시제품 제작비'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참고2] 연구개발과제 관련 용어 정의

● 참여기업

- 연구개발(R&D)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(민간부담금)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의미하며, 본 프로그램의 R&D과제는 주관연구기관(중소기업)이 그대로 '참여기업'이 됩니다.

※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(중소기업)에서 전체 민간부담금을 부담합니다.

● 위탁연구기관

-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(중소기업)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

※ 다만,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기술개발 내용을 위탁기관에 의존하는 방식의 위탁연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연구시설·장비비

-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반영구적 내구연한이 있는 연구장비 등은 연구시설·장비비로 편성을 해야 하며,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을 본 비목에 편성해서는 안됩니다.
- 또한,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**'예산 심의 요청서'**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.

※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는 '연구재료비' 항목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, 연구장비 성격의 비용을 연구재료비 항목에 편성해서는 안됩니다.

감사합니다

Thank You

